

의안번호	2207969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5. 2. 14.
추 계 번호	25B060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6억 1,800만원(연평균 7억 2,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선박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안 제30조의2)	3,618	—	—	—	—	3,618	724

주: 1.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 전체에 대하여 1척당 4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선박수 및 선박당 설치 대수, 설치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신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0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신설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안 제30조의2 신설)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임¹⁾

1) 현재 국내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으로 카페리선박만을 대상으로 함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페리선박”이라 함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

제6조(차량구역) ⑥ 폐위된 차량구역을 가지는 카페리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교에서 해당 차량구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은 532척으로, 개정안에 따라 해당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자별 선박척수

(단위: 척)

합계	정부	지자체
532	209	323

자료: 해양수산부

[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용도별 선박척수

(단위: 척)

합계	여객선	부선	화물선	기타선 ¹⁾
532	71	10	6	445

주 1) 순찰선(104척), 작업선(20척), 시험조사선(19척), 소방선(19척), 항로표지선(18척) 등으로 구성
자료: 해양수산부

[표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톤수별 선박척수

(단위: 척)

합계	100톤 이하	100~200톤	200~300톤	300~400톤	400~500톤
532	426	64	11	5	7
500~600톤	600~700톤	700~800톤	800~900톤	900~1,000톤	1000톤 이상
2	6	—	1	—	10

자료: 해양수산부

- 개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상 선박의 종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설치대상 선박,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사양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 전체에 대하여 선교 1대, 양현 각 1대(2대), 기관실 1대 등 총 4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2. 선교에서 차량구역 출입문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등 및 가청경보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단가로 어선용 CCTV 설치 단가를 적용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6억 1,800만원(연평균 7억 2,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 중 일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선박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여부 및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전체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4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 수의 변동 현황 자료가 부재하여 선박 수의 변동 추이를 알 수 없어 향후 추계 기간 중 현재 선박 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143~209만원)의 중간가격인 17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추계기간 중 첫해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이후 별도의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170\text{만원} \times 4\text{대} \times 532\text{척} = 36\text{억 } 1,760\text{만원}$

[표 5]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3,618	-	-	-	-	3,618	724

주: 1.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 전체에 대하여 1척당 4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선박수 및 선박당 설치 대수, 설치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 전체에 대하여 1척당 4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선박수 및 선박당 설치 대수, 설치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